

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에 공고토록 하여 널리 알려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자 함. 공고규정은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음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

별표 제2호 분야별 수수료의 「수수료 징수대상 사무」 중 “마. 석유판매업 등록(1종)”을 “마. 석유판매업 등록(2종)”으로 하고, 마목의 “(1)일반대리점·용제대리점”란 다음에 “(2)부생연료유판매소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수 수 료 징수대상사무	단 위	금 액	근거법령
(2) 부생연료유판매소	1건	20,000원	석유사업법 제31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공공시설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규정

에 의한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- 2.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”의 확정사항
- 3. 행정·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,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- 1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
- 2.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
- 3.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(특별시·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)의 재산취득·처분
- 4.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·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